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48
----------	------

2020년 9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년 8월 12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 1. 제안이유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여성플라자 일부 시설 휴관에 따른 이용자 감소, 대관취소 등으로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 및 시설 관리·운영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함
-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여성가족재단 추가 출연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단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등
  - 지원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나. 주요 사업

- 여성, 가족, 보육, 돌봄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경제력 강화,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
-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돌봄 지원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관리 등

다. 추정개요

(1) 추경예산 : 460,812천원

※ 총 출연금액 : 13,859,339천원 (기정 출연금액 : 13,398,527천원 포함)

(2) 추경필요성

- 서울여성가족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여성플라자는 설립 이래, 시설 임대료, 대관료 등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및 시설물 관리비 등 기본 운영비용을 충당해 왔으나,
-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5일부터 임대 시설 휴관 조치에 따라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등을 감면하였음
- 또한, 휴관에 따른 이용자 감소, 대관취소 등 자체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이나 시설운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손실 보전금 460,812천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음

(3) 추경예산 산출 근거

- 추경 요청액 : 460,812천원
- ▶ 임대료 감면 등 수입손실액(1,084,872천원) - 사업축소 등 자체 세출절감액(624,060천원)

○ 임대료 감면 등 수입 손실액 : 1,084,872천원(7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시설	계	수입 손실					비 고
			2월말~3월	4월	5월	6월	7월	
<b>합 계</b>		<b>1,084,872</b>	<b>287,853</b>	<b>211,518</b>	<b>125,025</b>	<b>230,238</b>	<b>230,238</b>	
시설운영 수입	자체수입 (직영)	303,713	101,672	56,594	17,191	64,128	64,128	최근 3년 평균 대비 손실액 임대료 손실 (일할계산)
	임대수입 (위탁)	511,008	116,721	110,062	62,471	110,877	110,877	
기타수입	관리비	270,151	69,460	44,862	45,363	55,233	55,233	전년 동월 관리비 기준

※ 7월 이후 2.3억원/月 (7,010천원/日) 손실 발생

○ 사업 축소 등 세출 절감액 : 624,060천원(7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절감예산	절감 내역	비고
<b>합계</b>		<b>624,060</b>		
시설유지	보일러기능보강 연기	130,000	기능보강 연기, 저녹스버너 설치 (170,000천원-40,000천원)	사업 연기
	리모델링 설계 일부 축소	90,000	공간 리모델링 설계 축소(연수실만 적용) (169,257천원-79,257천원)	설계 축소
	시설물 보완 축소	74,520	시설물 보완공사, 도색, 설비교체 취소 등 필수기능 유지 외 축소	공사 축소
일반운영	수도광열비 등 절감	200,000	휴관에 따른 수도광열비 절감액 (5월 현재 1.3억 절감)	
	시설사용료 감면	45,000	휴관에 따른 市 납부 사용료 감면 (325,197원×139일, 7월말 기준)	
기타	기타 비용 절감	84,540	대면교육, 조사평가, 채용조정, 행사운영, 회의, 간담회 등 절감 가능한 사업 연기 및 취소 등	일부 축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서울여성플라자 일부 시설 휴관 등에 따른 자체수입의 감소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이라 함)’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추가 출연을 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 절차로서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건임.

지방재정법
<b>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b>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b>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b>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한편, '19년 6월에 개정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 또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서울시장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와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새로 규정하였는데, 본 동의안에는 개정 조례에서 명시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 2 여성가족재단 추가 출연의 적정성

-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여성가족재단조례」”라 함)를 근거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통해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02년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주요사업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사업 및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외에도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등이 해당됨.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3.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6.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 7.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 8.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 9.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
- 10.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 11.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여성가족재단의 2020년 예산총액은 182억원으로, 수입 예산은 크게 서울시 예산을 통한 출연금 134억원과 여성플라자 운영 수입 등 자체수입 48억원으로 구성됨.

〈 2020년 여성가족재단 수입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비율)	2019년(비율)	증감(증감율)
계	18,210(100%)	12,952(100%)	5,258(40.6%)
출 연 금	13,399(73.6%)	8,901(68.7%)	4,498(50.5%)
자 체 수 입	4,811(26.4%)	4,051(31.3%)	760(18.8%)
사업운영수입	8(0.0%)	8(0.1%)	-
시설운영수입	1,947(10.7%)	1,947(15.0%)	-
기 타 수 입	825(4.5%)	808(6.2%)	17(2.1%)
이월 잉여금	280(1.5%)	30(0.2%)	250(833.3%)
대행사업수입	1,751(9.6%)	1,258(9.7%)	493(39.2%)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서울시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여성플라자의 휴관<sup>2)</sup> 및 이용자 감소에 따라 올 2월말부터 7월까지 시설운영수입 및 기타수입의 손실이 약 10억 8,487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말까지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서울여성플라자 시설운영 세입감소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시설명	수입 손실		비 고
		2월말~6월말	7월말	
시설운영 수입	자체수입(직영)	239,585	64,128	3년 평균대비 손실액
	임대수입(위탁)	400,131	110,877	사용료 손실(일할계산)
기타수입	관리비	214,918	55,233	전년 동월 관리비 기준
합 계		854,634	230,238	
누적합계		854,634	1,084,872	

- 한편 여성가족재단은 시설운영 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자구책의 일환으로 사업연기 및 취소, 일반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세출예산 6억

2) <코로나19 대응 휴관기간>

(2020. 7월말 기준)

구분	1차	2차	휴업일수	비고
식당/연수실	3/01~5/10 (71일)	5/30~7/31 (63일)	134일	
스포츠센터	2/27 ~ 7/31		161일	연속 휴업중
커피전문점	2/25~5/10 (76일)	5/30~7/31 (63일)	139일	
직영(대관)	2/25~5/10 (76일)	5/30~7/31 (63일)	139일	

2,406만원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 기준 손실액은 4억 6,081만원에 달하는 바, 여성가족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여성가족재단 세출예산 절감안 〉

(단위: 백만원)

구분		절감예산	절감 내역	비고
시설 유지	보일러기능보강 연기	130,000	기능보강 연기, 저녹스버너 설치 (170,000천원-40,000천원)	21년 시행
	리모델링 설계 일부 취소	90,000	공간 리모델링 설계 축소(연수실만 적용) (169,257천원-79,257천원)	21년 설계
	시설물 보완 취소	74,520	시설물 보완공사, 도색, 설비교체 취소 등 필수기능 유지 외 취소	21년 시행
일반 운영	수도광열비 등 절감	200,000	휴관에 따른 수도광열비 절감액 (5월 현재 1.3억 절감)	
	시설사용료 감면	45,000	휴관에 따른 市 납부 사용료 감면 (325,197원×139일, 7월말 기준)	
기타	기타 비용 절감	84,540	대면교육, 조사평가, 채용조정, 행사운영, 회의, 간담회 등 절감 가능한 사업 연기 및 취소 등	일부 취소
합계		624,060		

- 한편 코로나19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여성플라자의 운영손실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출연이 발생할 수 있는 바, 재단 출연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 추가 출연에 따른 동의안 제출의 타당성

- 2020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여성가족재단 운영 예산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3)</sup>에 따라 사전절차로서 서울시의회의 출연 동의를 의결받은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회계연도의 예산 출연에 대해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이 출연된 이후, 고유사무의 범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추가 출연에 대해 또다시 의회의 동의를 의결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출연 동의는 말 그대로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로, 출연금의 규모 등 실제 얼마나 출연을 할지 여부는 예산안 심의절차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진다 할 것이며, 금번 동의안과 같이 이미 출연이 기동의된 사안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출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출연금 금액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지 별도의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바, 의회의 의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공기업담당관)에서 법제처에 의회의 추가 출연동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법령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12, 2019.01.31.; 공기업담당관

3)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583, 2019.2.1.)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출연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출자·출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 당초 사전의결을 받았던 출자·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의 변동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다시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출연기관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전의결 사항의 변동여부는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와 함께 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748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 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여성플라자 일부 시설 휴관에 따른 이용자 감소, 대관취소 등으로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 및 시설 관리·운영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여성가족재단 추가 출연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단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 규모 : 지하 3층, 지하 5층(대지 6,488㎡, 연면적 22,519㎡)
  - 지원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나. 주요사업

- 여성, 가족, 보육, 돌봄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경제력 강화,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
-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돌봄 지원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관리 등

## 다. 추경개요

### 1) 추경예산 : 460,812천원

※ 총 출연금액 : 13,859,339천원 (기정 출연금액 : 13,398,527천원 포함)

### 2) 추경필요성

- 서울여성가족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여성플라자는 설립 이래, 시설 임대료, 대관료 등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및 시설물 관리비 등 기본 운영비용을 충당해 왔으나,
-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5일부터 임대 시설 휴관 조치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등을 감면하였음
- 또한, 휴관에 따른 이용자 감소, 대관취소 등 자체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이나 시설운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손실 보전금 460,812천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음

### 3) 추경예산 산출 근거

- 추경 요청액 : 460,812천원

▶ 임대료 감면 등 수입손실액(1,084,872천원) - 사업축소 등 자체 세출절감액(624,060천원)

○ 임대료 감면 등 수입 손실액 : 1,084,872천원(7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시설	계	수입 손실					비 고
			2월말~3월	4월	5월	6월	7월	
합 계		1,084,872	287,853	211,518	125,025	230,238	230,238	
시설운영 수입	자체수입 (직영)	303,713	101,672	56,594	17,191	64,128	64,128	최근 3년 평균 대비 손실액
	임대수입 (위탁)	511,008	116,721	110,062	62,471	110,877	110,877	임대료 손실 (일할계산)
기타수입	관리비	270,151	69,460	44,862	45,363	55,233	55,233	전년 동월 관리비 기준

※ 7월 이후 2.3억원/月 (7,010천원/日) 손실 발생

○ 사업 축소 등 세출 절감액 : 624,060천원(7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절감예산	절감 내역	비고
합계		624,060		
시설 유지	보일러기능보강 연기	130,000	기능보강 연기, 저녹스버너 설치 (170,000천원-40,000천원)	사업 연기
	리모델링 설계 일부 축소	90,000	공간 리모델링 설계 축소(연수실만 적용) (169,257천원-79,257천원)	설계 축소
	시설물 보완 축소	74,520	시설물 보완공사, 도색, 설비교체 취소 등 필수기능 유지 외 축소	공사 축소
일반 운영	수도광열비 등 절감	200,000	휴관에 따른 수도광열비 절감액 (5월 현재 1.3억 절감)	
	시설사용료 감면	45,000	휴관에 따른 市 납부 사용료 감면 (325,197원×139일, 7월말 기준)	
기타	기타 비용 절감	84,540	대면교육, 조사평가, 채용조정, 행사운영, 회의, 간담회 등 절감 가능한 사업 연기 및 취소 등	일부 축소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양경은(☎ 2133-5038)